

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29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10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 하며,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함(안 제9조).
- 나. 공정무역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을 두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, 위원 구성을 모두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함(안 제10조제3항).
- 다.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(안 제10조제4항).

라.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
심의 기능을 삭제함(안 제11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정
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주체와 기능을 ‘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’로
변경하고, ‘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’에 따라 개최
실적이 저조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 구성을 전문가
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됨.

나. ‘공정무역위원회’의 기능과 현황

- 서울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
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고, 공정무역에 관한 국내의 저변과
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
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공정무역조례」”)를 제정함(2012.11.1.).
 -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▶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,
▶판로 마케팅, ▶교육·홍보·캠페인, ▶공정무역단체 지원 사업
등이 시행되고 있음.

-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정무역위원회는 ▶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·평가, ▶ 정책 자문 및 심의, ▶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, ▶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함.

<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실적 >

연 도	개최실적			개최현황		개최 방식	안 건
	소 계	대 면	서 면	개최일	참석인원		
합 계	16회	9회	7회				
2013	1회	1회	-	2013.04.03.	6명	대면	◦ 위원위촉 및 공동 위원장 선출 ◦ 2013년 공정무역 사업계획자문 및 심의
2014	3회	1회	2회	2014.04.10.	4명	대면	◦ 2014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
				2014.07.23.	5명	서면	◦ 2014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변경안 자문 및 심의
				2014.08.26.	5명	서면	◦ 2014년 공정무역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선정 결과 심의
2015	3회	2회	1회	2015.04.07.	7명	대면	◦ 2015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심의 ◦ 위원 위촉보고 및 임기연장
				2015.8.18.~24.	7명	서면	◦ 2015년 공정무역 교육연구, 커뮤니티 공모사업 기관선정 결과심의
				2015.12.30.	6명	대면	◦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기본계획 심의확정
2016	3회	2회	1회	2016.04.15.	6명	대면	◦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기본계획 심의 ◦ 2016년 공정무역 캠페인 사업선정 ◦ 공정무역위원 위·해촉
				2016.07.07.	6명	대면	◦ 2016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단체 최종심사
				2016.07.22.	5명	서면	◦ 공정무역 지구마을 매장 운영방법 변경승인
2017	2회	2회	-	2017.03.09.	7명	대면	◦ 공정무역도시 기준(안) 설정 및 2017년 사업계획 심의 ◦ 공정무역위원 위촉보고
				2017.04.05.	5명	대면	◦ 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보고(10명 → 9명) ◦ 2017 지원사업 선정(단체 10개, 자치구 8개)
2019	1회	1회	-	2019.04.04.	7명	대면	◦ 공정무역위원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및 공동위원장 선출 ◦ 2019년 민간단체 및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(안) 심의
2020	1회	-	1회	2020.4.10.	6명	서면	◦ 2020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
2021	1회	-	1회	2021.3.8.	6명	서면	◦ 2021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 ◦ 공정무역위원 위촉보고(6명 임기연장)
2022	1회	-	1회	2022.4.5.	5명	서면	◦ 2022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

- 그러나 공정무역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의 소속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, 위원회 개최실적도 연간 1회 수준에 머물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.

다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(1)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의 변경(안 제9조 및 안 제11조)

- 개정안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, 공정무역 위원회에 회부·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(안 제9조제3항·제4항),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에서 ‘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’를 삭제함(안 제11조제3호)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신청 및 접수 등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. ④ 시장은 제3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	제9조(신청 및 접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----- -----. ④ ----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----- -----. -----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 1.2. (생략) 3.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.5. (생략)	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 1.2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4.5. (현행과 같음)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조례안의 의회제출,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결정, 보조사업 운영 평가,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은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명단공표,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추가함.
-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는 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와 ‘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회’를 구성·운영하도록 했으나,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심의와 구(舊)「지방재정법」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‘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’ 관련 규정을 삭제(2017.7.13.)함¹⁾.
- 그러나 「공정무역조례」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,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까지 존치되어 있음.
-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,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1) 舊 「지방재정법」(現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)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,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개정됨.

(2) 위원회 비상설화 및 위원구성의 변경(안 제10조 및 안 제12조)

- 개정안은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(제10조제1항·제4항),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인 서울시 공무원을 삭제하며(안 제10조제2항·제3항), 정기회와 임시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)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·국장 1인, 공정무역 관련 단체,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0조(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위원장 1명-----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--- ----- 호선한다.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----- ----- ----- 위촉한다.</p> <p>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p> <p>2.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p> <p>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2조(회의 등) <삭제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- 당초 연간 3회 수준으로 운영되던 공정무역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심의 기능이 상실된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회 수준으로 공정무역

사업계획의 심의·자문을 위한 서면회의만 개최됨.

- 또한, ‘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’을 통해 개최실적이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공정무역위원회의 비상설화가 추진됨.
 -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상시적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와 달리 비상설위원회는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시에만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함.
- 이와 함께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됨.
-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운영형태를 비상설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.
- 다만,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공정무역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,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시의원까지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최범준	02-2180-8058